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9월 3일, 김현정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9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4.

9. 24.) 상정·검토보고·소위원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4. 9. 30.)

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4.

9. 30.) 상정·대체토론·소위심사보고·찬반토론·의결(대안반영

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현정의원)

딥페이크(Deep Fake)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.

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,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,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, 교육·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11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건오)

- 딥페이크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 현행 제4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시책의 내용이 현행법상 시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현)

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